



기후변화협약 11차 당사국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참가

문의전화 : 국제경제국 환경과학과(2100-7743) 720-4537 발표일시 : 2005.11.25(금)

제목 : 기후변화협약 11차 당사국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참가

국제경제국
환경과학과
(2100-7743)

1. 금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(COP 11)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(COP/MOP 1)가 11.28-12.9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동 회의에는 전세계에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 외에 국제기구, 민간단체, 산업계 등 10,000여명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, 외교통상부, 환경부, 산업자원부 등 13개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과 산업계, 환경단체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
2. 금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선진국(부속서 1국가 38개국)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 형성, 기술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. 그 밖에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여부,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대한 영향과 적응 등 폭넓은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.
3. 특히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제1차 의무공약기간(2008- 2012년)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. 이와 관련,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원칙하에서 지

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참여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.

4. 상기 회의 기간중 우리나라는 회의 주최국인 캐나다와 양자협의를 개최하여 한-캐나다 청정개발체제(CDM)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청정기술 및 환경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.
5. 우리 대표단은 금번 회의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개도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(EU 의장국).프랑스 등 선진국,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강화하는 한편,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협상그룹인 EIG(Environmental Integrity Group) 공동 입장을 마련하여 다자적인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.
6. 우리 대표단은 또한 새로이 설립되는 의무준수위원회 등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구에 우리 전문가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.
7.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2년 체결되어,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89개국이 가입하였으며, 부속서 I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. 한편,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 개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현재 우리나라 등 15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, 부속서 I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(2008-2012년)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.2% 감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

첨 부 :

1.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개요
2.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개관. 끝.

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

【 첨부 1 】

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개요

1. 일시 및 장소

- 2005.11.28~12.9, 캐나다 몬트리올
 - 11.28~12.6 :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,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, 부속기구 회의 및 의제별 소그룹회의
 - 12.7~12.9 : 각료급 회의(당사국별 기조연설)

2. 참가자

- 협약당사국(189개국), 국제기구, NGOs 등 약 10,000여명
- 정부대표단(59명) : 국조실, 환경부, 외교부, 재경부, 과기부, 건교부, 산자부, 산림청, 농진청 및 에너지경제연구원, 환경정책평가연구구원, 환경관리공단 등
- ※ 기타(30여명) : 국회, 산업계, NGOs 및 학계, 언론사 등

3. 주요 의제

-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(COP11)
 - 항공 및 해상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여부
 -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등에 관한 「5개년 작업 프로그램」 마련
 -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형성, 기술이전 방안 등
-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(MOP1)
 - 1차 공약기간('08~'12) 이후의 감축의무 협의
 - 부속서1 국가의 교토의정서 이행점검
 - CDM 등 교토메카니즘의 효과적인 이행방안 등

4. 주요 회의일정 및 정부대표단 활동 계획

기간	주요 회의일정	정부대표단 활동
11.28	COP 11, COP/MOP 1, 제23차 부속기구회의(SBSTA, SBI 23) 개회	○ 정부 실무대표단 회의 참가
11.29	제23차 부속기구회의	
11.30	COP 11, COP/MOP 1 전체회의, 부속기구회의 속개	
12.1-12.5	의제별 협상그룹회의 진행	
12.6	부속기구회의 폐회	
12.7-8	고위급 회의	○ 각료급 패널회의 참가 ○ 수석대표 기조연설 발표 ○ 양자 및 다자회의 참가
12.9	결정문 채택, COP 11 및 COP/MOP 폐회	

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개관

1. 기후변화협약

가. 기후변화협약채택('92) 및 발효('94)

- 2005년 현재 189개국 비준
- 우리나라 1993.12월 가입

나. 주요내용

- 공통의무사항 : 모든 당사국
 - ① 온실가스 배출저감시책의 자체적 수립·시행
 - ② 국가보고서 작성·제출(온실가스 통계 및 정책이행 등)
- 특정의무사항 : Annex I, Annex II 국가
 - ① Annex I 국가 :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
 - 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강제성이 없는 사항
 - ※ Annex I : 채택당시 24개 OECD 국가·동구권국가(총 39개국) 및 EC
 - ※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(non-Annex I 국가) 지위
 - ② Annex II 국가 :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
 - ※ Annex II : 채택당시 24개 OECD 국가 및 EC

〈 지구 온난화 현상 〉

-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 0.6도 상승 ※ 우리나라는 1.5°상승
(향후 100년간 1.4-5.8도 상승 예상)
 - 해수면은 10-25cm 상승 (향후 1m 상승 예상)
 - ※ 출처 : 2001.1.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(IPCC) 제3차 보고서
- 원인 : 대기중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 복사열 차단
 - 20세기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기인
 - 이산화탄소(CO₂), 메탄(CH₄) 등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
- 영향 : ① 홍수·가뭄·폭염 등 기상이변 피해의 속출 및 질병·사망 등 인체에의 악영향
 - ②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작면적 감소와 주거지 상실
 - ③ 산림포함 생태계의 파괴 등

2. 교토의정서

가. 교토의정서 채택('97) 및 발효(2005.2월)

- 2005.11월 현재 156개국 비준
- 우리나라 2002.11월 비준

나. 주요내용

① 온실가스 규정(Annex A)

- 6대 온실가스 : 이산화탄소(CO₂), 메탄(CH₄), 아산화질소(N₂O), 수소불화탄소(HFCs), 과불화탄소(PFCs), 육불화황(SF₆)

< 온실가스의 종류 >

	CO ₂	CH ₄	N ₂ O	HFCs, PFCs, SF ₆
지구온난화지수(CO ₂ =1)	1	21	310	1,300-23,900
온난화 기여도 (%)	55	15	6	24
배출원	에너지사용 /산업공정	폐기물/농업/ 축산	산업공정/ 비료사용	냉매/세척용

②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규정(Annex B)

- 대상국가 : 협약상 Annex I 국가(총 40개국)에서 터키와 벨라루스 제외 38개국 Annex B 국가로 재조정
 - ※ 터키와 벨라루스는 '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 미가입국
- 목표연도 : 2008-2012(1차 공약기간)
- 감축목표 : 온실가스 배출량은 '90년대비 의무부담 국가 평균 5.2%를 감축하되 국가별로 차등화(구속적 의무)
 - ※ EU : -8%, 미국 : -7%, 일본 : -6%, 러시아 : 0%

③ 신축성 메카니즘(Flexible Mechanism) 도입

- 선진국들이 자국내 온실가스 감축외에 보조 장치로 온실가스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하기 교토 메카니즘(Kyoto Mechanism)을 도입
 -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(감축의무의 자국내 이행에 한계고려)

- 공동이행제도(Joint Implementation) : Annex I 국가가 다른 Annex I 국가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
- 청정개발체제(Clean Development Mechanism) : Annex I 국가가 non-Annex I 국가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
- 배출권거래제(Emissions Trading) :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(Annex B)간에 배출권거래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